

재해사례

(캐노피→떨어짐)

현관 캐노피 상부작업 장소 이동 중 떨어짐



요양원 시설관리 작업자가 현관 입구 캐노피 상부에 올라가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려고 2층 창문을 통해 캐노피 위로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짐



재해발생 원인

- 불안정한 통로를 통한 작업장소 이동
 - 현관 캐노피에서 작업 수행을 위해 해당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층 창문을 통해 이동
 - ※ 창문에서 바닥까지 높이 : 약 3.5m, 현관 캐노피 최상부의 높이 : 약 2.6m
-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

재해예방 대책

- 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 설치
 - 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사다리 등의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
-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수행 시 안전모,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

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떨어짐 재해예방 안전작업

✓ 사망재해 발생원인

- 떨어짐(추락)으로 인한 사망사고는
 - ① 사다리의 파손이나 헛디딤에 의해 실족
 - ② 지붕위에서 보수작업 중 섀라이트 등 약한 부위 파손
 - ③ 트럭·적재함에서의 적재·포장 작업, 건축물·설비 등 높은 곳에서의 불안정한 작업
 - ④ 작업발판 설치 방법 부적절로 인한 넘어짐에 의해 발생함



✓ 위험예방 대책

- ①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,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 실시 (동료가 붙잡아 주기)
- ② 지붕 위 작업시에는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·사용하고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
- ③ 트럭 적재함 등 높은 곳에서 작업시 안전모·안전화·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
- ④ 작업발판으로 박스, 회전일자 등 유동성이 있는 것은 금지하고 고정 작업발판을 사용
- ⑤ 떨어짐 위험장소 또는 기계·설비 등에서 작업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. 단, 불가능한 경우 안전방망 설치
- ⑥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, 울타리, 덮개 등을 설치
- ⑦ 덮개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고,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
- ⑧ 안전방망, 난간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에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

